

#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사회권)의 이해를 위한 글\*

최 은 아 · 허 혜 영\*\*

## I. 시작하며

이 발제는 인권의 역사 속에서 사회권이 출현하게 된 배경과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인권법 체계 안에서 사회권-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중심으로-의 성립과 사회권의 주요 권리항목을 소개하고, 사회권에 대해 그동안 왜곡되어 온 몇 가지 논점에 대해 살펴본다.

## II. 인권의 역사 속에서 사회권의 등장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 최초의 제도는 영국에서 출현하였다. 이것이 바로 1215년의 ‘대헌장’(Magna Carta Libertatum)이다. 대헌장은 성문법에 의해 왕권을 규제한 최초의 문서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대헌장 이후, 절대적이고 신성불가침의 권리였던 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입헌주의적 전통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의 보편적이고 침해할 수 없는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 것은 아니었다.

### 1. 근대시민혁명과 자유권 중심의 인권보장체계

17, 18세기에 이르러서야 자연법사상, 천부인권사상, 그리고 신분적인 영예와는 독립하여 존재하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관념 등이 싹트기 시작하였고, 인간의 권리(the rights of Man)라

---

\* 이 글은 인권운동사랑방이 정리한 [‘인권개념과 역사’ - 송실대 교육안]과 [사회권규약해설서]에서 그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는 개념이 명백하게 주장되기 시작하였다.

자연법<sup>1)</sup>은 모든 인간이 양도할 수 없는 절대적인 성격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자연적 권리로서 안전과 생명, 그리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제시했다. 로크로 대표되는 근대 자연법학자들이 재산권을 국가권력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로서 천명한 것은 당시 전개되고 있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소유양식을 정당화하고 그 발전을 촉진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계약'에 따라 정치사회가 구성되었다고 보았다. 사회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정부는 인민의 수탁자(受託者)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가 인민의 동의에 의거하지 않고 자연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인민은 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저항권을 갖는다.

특히 루소(Jean-Jauques Rousseau, 1712-1778)<sup>2)</sup>는 인민이 일반의지의 표현인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과 공무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리, 정부가 일반의지에 반하여 행동할 때 정부를 폐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구체제에서는 단지 지배의 대상이었던 국민이 이제는 인권의 주체이자 국가권력의 원천으로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봉건적 압제에 반기를 들고 신(神)중심적, 신분질서중심적인 봉건체제를 타파하고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시민사회를 건설하고자 한 근대시민혁명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또한 국가권력의 존재 이유와 정당성의 근거를 인권의 보장에서 찾음으로써 근대적인 인권보장체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정치적 평등과 의회민주주의의 원리가 발전, 정착되기 시작했다.

## 2. 드러나는 모순 - 자유와 평등의 실질화를 위한 투쟁

그러나 근대시민혁명이 가져온 인권보장 체계에 밝은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자유와 평등이 근대시민혁명의 핵심적 이념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혁명이 끝난 이후 자유와 평등은 상당부분 굴절 또는 축소되는 과정을 겪어야만 했다.

- 
- 1) 자연법사상은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으나, 근대적인 의미의 자연법사상은 자연을 지배하는 질서를 신적 질서가 아닌 인간 자신의 이성으로써 파악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근대적 자연법은 사회나 국가로부터, 즉 외부로부터 부여된 법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는 올바른 자연의 질서, 즉 정의(正義)의 법칙을 의미한다. 결국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낸 합리적인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 2) 루소와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루소는 사적 소유의 출현으로 인해 평등하고 자유로운 자연상태가 종결되고 불평등한 사회상태가 성립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자연상태 말기에 출현한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 '계약에 기초한 사회상태로의 이행'이라는 이상적 상황을 설정했다. 계약에 따라 각 구성원은 그의 모든 권리와 함께 자기를 전적으로 양도해야 하는데, 이는 모든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적 조건 하에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루소는 재산권을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규정한 로크와는 대비된다.

근대시민헌법은 무엇보다도 ‘자유권’ 중심의 인권보장체계였고 ‘평등’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형식적인 선언에 그쳤을 뿐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려는 노력을 보이지는 않았다.

‘자유’ 중에서도 시민계급이 철저히 옹호한 것은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데 필요한 계약의 자유, 경제 활동의 자유였을 뿐, 일정한 재산을 갖춘 남성에게만 선거권을 보장하는 제한선거제도<sup>3)</sup>를 유지하는 등 정신활동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 참정권 등 다른 자유의 내용들은 여러 가지 법률을 통해 제한하였다. 특히 주권의 소유와 행사를 분리하는 국민주권의 원리<sup>4)</sup>에 기초한 근대적 정치체제는 민중의 정치적 참여를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대다수 민중은 인간다운 생존을 요구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근대시민혁명과정을 통해 모든 인간의 이름으로 선언된 권리가 실제적으로는 ‘능동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의 도식 하에 부르주아계급 남성이라는 “능동적 시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는 근대시민헌법이 오직 부르주아계급의 남성들에게만 권리를 보장해주었던 역사적인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 결과 자본주의 시장논리의 무한한 확장에 따른 저임금·장시간 노동이라는 비인간적 노동조건, 실업과 저임금으로 인한 빈곤, 아동노동·빈곤·질병·열악한 노동조건에 따른 평균수명의 저하, 문맹(文盲), 범죄의 증가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었으나 정부는 철저한 자유방임적 자세를 고수하면서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였다.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민중의 불만이 쌓여가고 시장의 가혹한 착취가 자본주의 체제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안정적 재생산까지도 위협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면서, 시장에 대한 일정한 개입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입법과 강력한 국가가 요청되었다.

### 3. 사회권의 역사적 등장

프랑스 혁명 시기부터 이미 민중들은 부르주아하고는 다른 인권구상을 가지고 혁명무대에 등

3) 당시 프랑스에서는 여성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직접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재산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국민이라는 ‘납세자주주론’(納稅者株住論)에 따라 대다수 노동자들과 농민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층 부르주아계급에게조차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4) 국민주권이란 국민이 단일하고 분리될 수 없는 주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헌법원리이다. 이때 국민은 추상적, 관념적 존재로서, 그 자체로서는 의사결정능력이나 집행능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주권의 소유는 국민이지만 국민이 직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에 반해 루소가 적극적으로 제기한 인민주권론에서는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인민이 주권의 소유와 행사의 주체가 되며, 따라서 법률의 제정과정이나 대표자의 임명과 해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인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고 대표자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권력 남용의 저지와 인권보장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杉原泰雄, 『인권의 역사』, 한울, 1992, 48-49쪽.

장하여 독자적인 행동을 하고자 했다. 이들이 표방했던 인권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경제 활동의 자유가 아닌 정신활동과 신체의 자유를 강화하는 것 ▲시장에 대한 일정한 개입 혹은 시장의 극복을 통해 실질적 평등을 확장하는 것 ▲시민의 권리 행사를 가능케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 ▲압제에 대한 봉기를 인정하는 것 ▲형식적인 대의제가 아닌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 등이다. 프랑스혁명 후반기에는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평등한 노동의 의무를 요구하게 됐다. 이러한 민중의 노력은 즉각적인 성과로 나타나지 못하고 부르조아에 의해 묵살되었지만 이후 근대시민헌법의 인권보장을 비판하고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동력이 되었다.

이와 연장선상에 있는 파리꼬문은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한 역사상 최초의 민중권력이었다. 파리꼬문이 출연한 배경에는 자본주의의 비약적 발전과 동시에 나타난 비참한 사회관계계급관계가 놓여있다. 저임금장시간평균수명의 저하실업으로 인한 빈곤아동노동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계속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해 노동자계급은 전면적인 투쟁을 감행하였는데 그 투쟁의 도달점이 1871년 빠리꼬문이다. 파리꼬문의 인권보장은 ‘헌법’이나 ‘인권선언’ 등 체계적으로 정리되진 못했으나 그 양과 질에서 시민헌법의 인권보장을 넘어서고자 했다. 그 내용은 ▲절대적 자유의 보장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근원적으로 변혁함으로써 민중의 생활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것 ▲교육을 중시하여 무상성의 원칙에서 전면교육과 직업교육의 확대 ▲인민주권의 원리에 기반하여 ‘주민자치’ 중시 등이다. 파리꼬문은 착취계급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산물이며 그들의 인권구상은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려는 노력이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저항과 투쟁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공장입법을 개선하는 등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자본가 쪽은 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는 계급투쟁과 사회주의 혁명을 회피하고 체제내로 끌어들여 안정된 이윤추구를 확보하느냐하는 새로운 대응에 부심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근대 시민헌법적 인권보장의 형태를 수정하여 자본주의 틀 안에서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 ▲ 1917년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

1917년 러시아에서 볼셰비키가 이끈 혁명은 사회적 평등원칙에 기초하여 경제적 보장을 위한 권리를 혁명의 중요 결실이며 소비에트의 기본적 시민권으로 선언하였다. 1917년 12월 11일 러시아는 실업보험을 수립하였고, 29일 현금질병급여, 출산 및 장제급여 및 의료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이후 1918년까지 사회보장에 관한 입법들이 법령화되었다.

#### ▲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

1919년 독일 바이마르헌법<sup>5)</sup>을 시초로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미국 등 몇몇 나라를 제외한

대다수의 나라가 19세기까지 일관되게 견지했던 자유방임적 자세에서 벗어나 시장에 대해 일정하게 개입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국가(복지국가)의 이념을 도입하게 되었다.

#### ▲1919년 국제노동기구의 설립

19세기 후반 사회권은 자유권보다 먼저 국제적 차원에서 발견된다. 19세기 후반 국내적 차원에서 노동조건의 향상은 국제적 협력의 요구로 이어졌고 그리하여 이 영역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위한 첫 회의가 1890년 독일에서 열렸다.

1919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획기적인 발전은 국제노동기구의 성립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설립은 노동자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 공정하고 인간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었다. 국제노동기구는 ILO협약들을 통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최저기준을 많이 확립해왔다. 예를 들어, 집회의 자유, 노동조합 결성권, 강제노동금지, 최저노동연령, 근로시간, 질병으로부터의 보호, 산업재해, 실업 및 고령보험, 산업현장에서의 차별금지 등.

#### ▲1930년대 세계공황에서 제1, 2차 세계대전까지

국제적 차원에서 사회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은 1930년대 대공황을 겪고 난 후였다. 광범위한 실업과 빈곤, 이로 인해 나타나는 전체주의의 출현이 끔찍한 세계대전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대공황과 세계대전이 가져다준 황폐함 이후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이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로서 사회권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다.

### 4. ‘세계인권선언’의 제정 및 선포

세계대전 이후 1945년 창설된 유엔은 그전까지 국내문제로만 인식하던 인권문제를 국제적 관심사로 확대시켜 나갔다. 또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이 국제적 과제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인권법의 발달에 기초를 제공하였다. 또한 유엔에 인권을 정의하고 성문화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였다. 유엔은 1946년에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만들면서 세계인권선언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문서형식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다가 결국에는 ‘선언’과 ‘조약’의 별도 문서를 만들기로 합의하고, ‘세계인권선언’을 제정하여 1948년 12월 10일 선포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차

---

5) 바이마르헌법은 제1차 세계대전 패배에 따라 독일제국이 붕괴된 후 1919년 바이마르에서 열린 국민의회에서 제정된 독일공화국헌법을 말한다.

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민과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인권 기준을 확립한 것이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인권의 보편적 이념을 구현한 최초의 예라는 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식에 비해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한 한계를 지녔다. 즉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규범적인 국제문서에 불과하다는 점<sup>6)</sup>, 권리에 대응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기하지 않았다는 점,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특히 시민·정치적 권리(아래 자유권)의 내용<sup>7)</sup> 15개로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아래 사회권)의 내용은 6개 조항에 불과하다.

## 5.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성립과 발전

세계인권선언 제정 이후 법적 구속력과 제도적 장치를 보장하기 위한 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초안 작업을 준비한 인권위원회는 자유권을 중심으로 한 인권규약초안을 제출하였으나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반발로 인권규약초안에 사회권을 넣도록 하는 결의를 유엔총회에서 채택하게 된다. 이어 또 문제가 된 것은 사회권과 자유권을 하나의 규약으로 만들지 두 개의 분리된 규약으로 나눌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유엔총회의 결의는 하나의 방향이 제시되었지만 이에 대해 인권위원회는 양자를 별개의 규약으로 만들자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결국 유엔 차원에서의 여러 논의 끝에 1951년 제6차 유엔총회는 새로운 규약을 두 개로 분리시키고, 인권위원회가 시민·정치적 권리를 포함하는 국제규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포함하는 국제규약 등 두 개의 국제규약의 초안을 준비하도록 결정하였다.<sup>8)</sup>

당시 유엔 회원국들 사이에는 사회권과 자유권의 관계는 서로 연결되었고, 상호의존적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었다. 다만, 회원국들 사이에는 두 권리 범주의 속성과 권리실현 방법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었다.

6) 세계인권선언은 비록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했으나, 오늘날에는 인권에 관한 가장 권위있는 국제문서로서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의 지위로 격상되고 있다.

7) 전문과 총 30조로 구성된 세계인권선언 중 자유권 영역에 포함되는 것은 제3조 생명권, 제4조 노예제도 금지, 제5조 고문 및 비인도적인 처우 또는 형벌의 금지, 제7조 법 앞에서 평등, 제9조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의 금지, 제10조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재판, 제11조 무죄추정과 죄형법정주의, 제12조 사생활의 보호, 제13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14조 박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15조 국적을 가질 권리, 제18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제19조 의사표현의 자유, 제20조 집회결사의 자유, 제21조 선거를 통해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 등이다. 반면, 사회권 영역에 포함되는 것은 제22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제23조 노동할 권리, 노동조건 및 노동조합결성권, 제24조 휴식·여가의 권리, 제25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및 사회보장의 권리, 제26조 교육받을 권리, 제27조 문화생활에 참가할 권리 등이다.

8) たばたしげじろう, 1994, 53~55쪽 참조.

사회권과 자유권을 하나의 규약으로 만들자는 것에 찬성하는 사회주의 국가들과 개발도상국들<sup>9)</sup>은 인권이란 몇 가지 범주로 명확하게 나뉘거나 가치의 서열을 따질 수 없고, 모든 권리는 동시에 이행되고 보호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권 없는 자유권은 순전히 명목상의 성격을 띠게 되고 자유권 없는 사회권은 오랫동안 안전하게 보호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권리를 포괄하는 하나의 규약이 필요하고, 당사국에 의해 엄격하게 이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sup>10)</sup>

반면, 사회권과 자유권을 두 개의 분리된 규약으로 만들자는 것에 찬성하는 미국 및 서유럽 국가들은<sup>11)</sup> 자유권은 강제할 수 있고 재판가능하며 즉시 이행이 가능하지만, 사회권은 강제적인 성격 없이 점진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자유권은 국가에 대항하는 개인의 권리, 즉 국가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에 대항하는 권리이고, 사회권은 국가가 이행을 적극적으로 행동해야만 하는 권리라고 보았다. 두 인권범주가 발생시키는 국가의무의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분리된 기구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2)</sup>

국제인권조약이 사회권과 자유권 두 개의 규약으로 나누어지는 데에는 미국의 영향이 컸다. 인권위원회의 단일 규약안을 미국은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미국은 만일 사회권의 내용을 자유권에 포함시킨다면, 국가가 경제나 정치적인 일에 간섭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sup>13)</sup> 다른 한편으로 단일 규약안을 지지했던 사회주의 및 개발도상국가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무려 3년에 걸친 논쟁과 18년에 걸친 규약초안 작업 끝에 유엔총회는 1966년 12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분리해서 채택하였다.

사회권과 자유권을 두 개의 분리된 국제규약으로 채택한 배경으로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미국 및 서유럽 국가들과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들 수 있다. 냉전 동안 동유럽과 서유럽은 그들의 정책과 인권개념에 사이에 중요한 차이와 긴장이 존재하였다. 동유럽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중심을 두었고, 서유럽은 그들의 자유주의적 전통에 기반한 시민·정치적 권리를 강조하였다.<sup>14)</sup> 사회권규약과 자유권규약 전문에는 인권의 상호의존성, 불가분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규약이 분리되어 채택된 이후 자유권규약은 이행 확보 수단을 마련하는 가운데 서구 자본주의 사회를 기반으로 인권의 중심체계로 발전하게 된다. 결국 권리범주와 이행방식에 대한 이분법적 접근은 국제적, 국내적으로 사회권의 실효성을

9) たばたしげじろう, 1994, 52~53쪽.

10) Henry J. Steiner & Philip Alston, 1996,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Context』, Clarendon Press-Oxford, 257쪽 참조.

11) たばたしげじろう, 1994, 52~53쪽.

12) Henry J. Steiner & Philip Alston, 1996, 260~263쪽.

13) Henry J. Steiner & Philip Alston, 1996, 260~263쪽.

14) Paul Hunt, 1999, 『Reclaiming Social Rights -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Ashgate Publishing Company, 7쪽.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사회권규약은 독자적인 규약 이행장치 없이 경제사회이사회가 국가보고서 검토업무를 맡았다. 더욱이 사회권규약의 국가 이행의무에 대해서는 규약 제2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권리의 완전한 실현’, ‘점진적인 달성’,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등 그 의미가 모호하여, 사회권 실현에 소홀한 정부들에게 의무불이행의 구실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1986년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1990년대부터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초안에 대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면서 사회권규약이 명실상부 국제인권법으로서 자리(당사국 2002년 2월 현재 145개국 비준)를 잡아나가고 있다. 또한 유엔 인권고등 판무관실을 필두로 여러 유엔 인권기구도 사회권 분야로 관심을 확장하고 있다.

### III. 사회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위하여

#### 1. 사회권과 자유권의 상호의존성 강조

자유권과 사회권의 향유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적'이어서 두 권리 중 하나가 박탈되었을 때 자유로운 인간으로서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 두 권리 간의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은 테헤란선언(1968년)과 비엔나인권선언(1993년) 및 행동계획에서 재차 확인되었다. 또한 사회권과 자유권의 통합적인 권리개념은 인종차별철폐협약(1966년 채택), 여성차별철폐협약(1979년 채택), 아동권리협약(1989년 채택) 등 주요 인권협약이 만들어질 때 그 내용에 포함되었다.

사회권과 자유권의 상호의존성은 ‘권리침해’ 현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권리의 박탈은 사회권 혹은 자유권으로 분리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많은 노숙자들이 주민등록증 말소로 선거권을 박탈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변호사 선임료가 없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당하는 사례들은 사회권이 박탈당하는 상황에서는 자유권도 향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또 다른 한편, 자유권이 제한 당하는 상황에서는 사회권도 향유할 수 없다.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은 종종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함으로써 건강권을 침해당한다.

#### 2. 권리 이행을 위한 국가의 역할 변화 : 국가의무에 기초한 접근으로

기존 인권체계에서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두 인권 범주가 발생시키는 국가의무에 대한 이론적, 정치적 왜곡에 의해서 정당화되어 왔다.

왜곡의 핵심은 자유권과 사회권이 부과하는 국가의무를 각각 ‘소극적 의무’ 대 ‘적극적 의무’로 일반화하여 구분하는 데 있다. 이에 따르면, 자유권은 단지 국가에게 불간섭의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사회권은 상당한 재정지출을 동반하는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권의 보장은 정치적 문제이지, 국가의 법적 의무는 아니라고 주장되어 왔다.<sup>15)</sup> 그리고 이러한 왜곡 위에서 사회권 관련 국제규범 및 헌법 조항의 법적 효력은 많은 경우에 부정되었다. 그들 대부분은 경제·사회적 권리를 헌법적인 권리로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시행을 위한 입법·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에게 사법적인 구제를 제공하는 나라들은 드문 편이다. 또한 자유권에 비해 사회권에서 보장된 인권들이 구체적이고 보편적이며 법적인 권리로서 인정되기보다는 추상적이고 도덕적이며 프로그램적 권리로 해석되는 관행을 낳았다.

그러나 자유권과 사회권에 대한 위와 같은 이분법은, 80년대이래,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그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sup>16)</sup> 실제로, 자유권이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요구하거나, 사회권이 소극적 의무이행으로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들은 기존 인권체계를 뒷받침하는 이분법의 한계를 드러낸다.

이분법적 접근은 국가의 이행의무를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자유권을 소극적인 의무로 사회권을 적극적인 의무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앞서 이분법적 접근이 결과적으로 권리를 차등화시키고 사회권의 발전을 저해한 요소로 지적되자 맥클렘, 에이드, 헌터 등 법학자들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인권에 대한 대안적 접근방식으로 ‘국가의무에 기초한 접근(state-obligation)’을 제시하였다. ‘국가의무에 기초한 접근’은 각각의 개별 인권들에서 다양한 수준의 국가의 의무가 나온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범주에 속한 어떤 인권이 시민·정치적 권리의 고유한 실현 방식으로 간주되었던 국가의 ‘소극적 의무(존중의 의무)’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고, 반대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고유한 실현방식으로 여겼던 ‘적극적 의무(보호의 의무, 실현의 의무)’가 시민·정치적 권리 범주 인권의 보장에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17)</sup>

예를 들어, 자유권 영역인 ‘고문 및 비인도적인 처우의 금지’의 경우 이분법에 기초한 국가의

15) 보다 자세한 내용은, E. Vierdag,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s Granted by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Netherlands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9, 1978; M. Bossuyt, "International human Rights System: Strengths and Weaknesses", in K. Mahoney and P. Mahoney(eds.), *Human Rights in the Twenty-first Century*, 1993.

16) 보다 자세한 내용은, van Hoof, G.J.H., "The Legal Nature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 Rebuttal of Some Traditional Views", in Philip Alston and Katarina Tomasevski(eds.), *The Right to Food*, 1984.

17) 허혜영, 200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사법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연구-유럽의 경험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4쪽.

무의 관점에서 보자면, 국가는 단지 개인에게 고문하지 않으면 된다. 하지만 고문 및 비인도적인 형벌의 금지는 단지 국가가 고문을 하지 않음으로써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고문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국가는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을 통해 고문 및 비인도적인 형벌을 금지시키고, 법집행 공무원에게 인권교육을 시켜야 한다. 또한 국가는 국민들에게 고문 및 비인도적인 행위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인권침해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 즉 국가의무에 기초한 접근은 권리의 보호와 존중, 실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국가의무를 이끌어 낸다.

한편, 사회권도 국가가 단지 직접 침해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은 많은 경우에 강제노동금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금지,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방출하는 핵실험 혹은 화학무기 실험금지, 강제철거금지와 같은 소극적 의무 이행으로도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

### 3. 존중할 의무, 보호할 의무, 실현할 의무

존중·보호·실현의 의무에 기초한 인권의 이해는 개별인권이 부과하는 국가의무를 구체화함으로써, 인권의 보다 효과적인 보호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세 유형의 국가의무에 기초하여 개별 인권조항들을 해석하는 일은 기존 인권체계 속에서 단지 선언적 규범으로 취급되는 사회권 규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우선, 존중할 의무는 국가가 개인의 권리 향유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예를 들어, 국가가 대안적 주거의 공급 없이 강제로 공유지의 무단 거주자를 내쫓는 것은 존중할 의무 위반에 의한 주거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국가 소유 시설이 공기, 토양, 물을 오염시켜 개인의 건강을 해친 경우, 특정 개인에게 차별적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 경우 등은 건강권을 존중할 의무를 위반에 해당한다.

이어, 보호할 의무는 제3자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 혹은 다른 방식의 조치를 취할 의무이다. 사기업에 의한 노동 착취 혹은 유해물 방출, 고리대금업자의 횡포,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의무가 이에 해당한다. 국제법률가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를 비롯한 일군의 전문가 집단에 의해 채택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The Maastricht Guidelines on Violation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은 다음과 같은 보호할 의무 위반을 인권침해로 규정하였다.<sup>18)</sup>

18) The Maastricht Guidelines on Violation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98, *Human Rights Quarterly*, 20(3), paras. 14(c), 15(d)

제14(c)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침해하는 제3자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경우.

제15(d)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혹은 집단을 규제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으로, 실현할 의무는 권리와 자유의 효과적인 실현에 목표를 둔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창출할 의무를 말한다. 국가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완전히 실현시키기 위해 적절한 법률·행정·예산·사법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므로, 국가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수적인 기초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이 의무의 핵심은 개인이 실업, 장애, 노령의 경우와 같이 그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다른 대안적 방법을 가지지 못할 경우에, 국가가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이다. 건강보험제도를 수립하고, 공공 주거를 제공하는 것 등이 실현할 의무에 포함될 수 있다.

### 3. 사회권에 대한 오해

오해 1: 사회권의 실현은 점진적으로 달성하는 문제이다.

사회권의 점진적 실현 그 자체가 국가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달성할 문제를 놓고 어떻게 국가의 의무이행 여부 혹은 권리침해 여부를 따질 수 있냐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근거 없는 우김일 뿐이다. 우선, 사회권의 모든 권리가 점진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권의 권리들 중에는 즉각적인 실현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예를 들어, 사회권규약 내에서 ‘제2(2)조의 차별금지’, ‘제3조의 남녀평등’, ‘제7(a)(i)조의 동일노동 동일보수’, ‘제8조의 노동조합의 권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국가의 즉각적인 의무이행의 대상에서 제외된 권리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다음 두 가지 사실에 따르면, 그러한 권리들을 실현하는데 ‘점진적인 달성’이 허용된다고 해서, 당사국의 법적 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첫째, ‘점진적인 달성의 의무’는 곧 ‘권리보장 상태를 계속해서 진전시켜야 할 의무’를 의미하며, 따라서 국가가 권리 보장상태를 후퇴시키는 조치를 취하거나, 사인에 의한 권리 후퇴조치를 묵인하는 것은 권리를 위반한 것이다. 예를 들어, 다른 대안조치 없이 무단 거주자를 내쫓거나, 특정 공공지출을 삭감한 경우가 모두 사회권의침해에 해당한다. 또한 국가의 경제상태가 악화되어 어쩔 수 없이 후퇴조치를 취한 경우라도, 국가가 국내의 모든 가용자원을 활용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 역시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둘째, 완전한 실현이 즉각적으로 달성될 수 없는 권리들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향유’를 ‘즉각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법적인 의무’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이러한 법적 의무를 국가의 최소핵심 의무라고 정의하고, 계속해서 발

표되는 일반논평들 속에 개별조항들이 내포하고 있는 ‘최소핵심의무’를 명백히 수립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논평 14는 건강권의 기본적인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최소핵심의무로서 다음을 든다.

- a. 취약계층도 차별 없이 의료 설비, 물자, 서비스에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
- b. 최소한의 적절한 영양을 함유한 필수 식품을 공급하며 모든 사람이 기아로부터 해방되도록 보장하는 것.
- c. 기본적인 주거와 안전한 식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 d. ‘WHO의 필수 의약품에 대한 행동강령’에서 정의한 필수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
- e. 보건 의료시설 및 물자, 서비스의 평등한 분배를 보장하는 것
- f. 전국민의 건강을 위해 국가차원의 공공 보건 정책과 계획을 도입하고 이행하는 것.
- g. 전염병 및 풍토병을 예방, 치료, 억제하는 방법을 제공
- h. 주요한 건강문제에 대해 예방법과 억제법을 포함하여 정보를 공급 등....

국가의 최소핵심의무는 가용자원 한도 내에서 ‘점진적인 달성’이 허용되지 않는 즉각적인 국가의 의무이다.

오해 2: 사회권의 향유는 가용자원이 들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보장하지 못한다.

여기서 가용자원은 국내자원은 물론이고 이용 가능한 모든 국제자원까지 포함한다.

가용자원의 향유를 바라보는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국가가 권리의 기본적 향유를 위하여 가용자원의 배분에 개입하여 자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자원배분에 개입할 수 있다. 먼저, 사적영역에 개입하여 자원을 재분배하는 조치이다. 예를 들어, 양도세나 재산세 부과를 통해 기본적인 권리보장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 최저임금이나 기타 적절한 노동조건을 기업에 규제하는 것, 또는 의료수가나 의약품 값 결정에 개입하는 것이다. 또한 그 사회에서 권리를 쉽게 침해받는 사람들의 권리보장에 확보된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두 번째로, 국가는 기본적인 권리보장을 중심으로 정부재정을 조정해야 한다. 특히, 많은 인권기구들이 지적하듯이, 정부지출 내 군사비용의 비율을 줄임으로써 기본적인 권리보장을 위한 정부지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가용자원의 이용’은 국가가 다양한 형태의 부의 재분배 조치들을 통해 획득될 수 있는 자원까지 포함한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돈이 없어서 사회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현재의 자원으로도 이것을 좀 더 효율적이고 평등하게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국가의 경제상태

가 악화되어 어쩔 수 없이 후퇴조치를 취한 경우라도, 국가가 국내의 모든 가용자원을 활용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주어진 가용자원으로도 정부는 권리 중심으로 재정운용을 재편성하며 취약집단에게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 IV. 사회권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요 권리들<sup>19)</sup>

##### <노동의 권리>

노동의 권리는 인간 생존의 핵심이 되는 권리로, 개인의 권리이며 동시에 집단적 권리이다.

노동의 권리는 다른 인권을 실현하는 데에 필수적이며 인간존엄과 분리될 수 없는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한다. 인간에게 있어서 노동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부문의 노동인지를 불문하고 생계와 생존, 삶의 기반이 되는 일차적인 수입원이다. 이것은 식량권, 교육권, 건강권 등 생존권 향유의 가장 기초를 이루기 때문에 노동 욕구 이상의 중요성을 지닌다. 또한 노동의 권리는 자유로이 선택되거나 수락되는 한 개인의 발전과 공동체 기여에 한몫을 담당한다.

제6조 노동의 권리는 ■자유롭게 노동을 선택할 권리 ■강제노동 및 노예노동 금지 ■자의적인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의 접근을 보장하는 보호시스템에 대한 접근권 등의 권리 항목을 담고 있다. 제6조 노동의 권리, 제7조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의 권리, 제8조 노동조합결성권은 상호의존적이다. 제6조 노동의 권리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노동권 자체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노동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예시적이고 비한정적인 방식으로 의무의 예를 열거하고 있다. 국가가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고용정책 등의 노동정책을 세우도록 이행의무를 두고 있다.

#####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의 권리>

제7조는 제6조의 노동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권리이다. 제7조는 최저

19) 사회권규약 내 권리의 실제 조항을 다루고 있는 것은 제6조부터 제15조까지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일반논평을 통해 각 권리에 해당하는 개념과 국가의무를 기술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 실제조항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담고 있는 일반논평을 참조하면 된다. 아래 실제조항의 내용은 유엔 인권고등판관실에서 발행한 「fact sheet 16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권리별 인권논평을 참조했다. 자료를 찾을 때 참조할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유엔인권고등판관 www.ohchr.org

임금에 대한 권리와 품위 있는 삶을 보장하는 적정한 임금 및 정당하고 쾌적한 노동조건을 규정한다. 이 조문은 최저임금결정협약, 평등한 보수협약을 비롯한 국제노동기구가 선택한 수많은 협약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모든 사람은 직장에서 건강 및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노동 환경을 보장받아야 하며, 당사국은 그러한 목적의 정책과 법률을 도입할 책임이 있다.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는 건강하고 안정된 노동조건으로 ■최저임금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상당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한 임금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조건 ■승진에 대한 동등한 기회 ■휴식, 여가, 합리적인 노동시간의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승진에 대한 동등한 기회는 국가의 즉각적인 이행이 가능하다.

#### <제8조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제20조 ‘결사의 자유’와 자유권규약 제22조 ‘모든 사람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갖는다’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제8조는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이 상호의존적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제7조와 더불어 사회권규약 중에서도 국가의 즉각적인 이행이 가능한 조항이다.

제8조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것을 보장하는 권리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노동자의 선택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 ■총연합을 설립할 권리 ■노동조합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 ■파업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당사국은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한에 의해 제8조 시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재량권을 허용 받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들은 반드시 좁게 해석해야 한다. 즉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8조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

#### <제9조 사회보장권>

사회보장의 권리는 크게 ■사회보험 ■사회원조 등을 포함한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국가주도의 사회보험을 통해 노령, 질병, 실업, 재해 등 소득의 중단상태에서 개인에게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제9조와 관련 해 의료, 질병수당, 출산수당, 노령수당, 장애수당, 유족수당, 산업재해수당, 실업수당, 가족수당 부문 등에 있어서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고 있는지 당사국에게 묻는다. 또한 사회원조는 특히 권리를 침해받기 쉬운 집단 - 최저빈곤선 이하에 놓여있는 집단으로 빈민, 노숙자, 결식아동·노인 등 - 에게 기본

적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해당한다.

#### <제10조 가정에 대한 지원과 보호>

제10조는 가정, 모성, 아동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다루고 있는 조항이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 자연적인 혈연집단이라는 단순한 가족 개념에서 결혼하지 않은 동거인, 동성애자 가족 등으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로운 혼인’의 경우는 시민·정치적 권리 제16조에서도 다루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부모나 후견인이 혼인을 결정하는 관습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법적으로 여성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제10조는 ■가정에 대한 최대한의 보호와 원조 ■산모에 대한 특별한 보호(유급휴가, 상당한 사회보장) ■차별 없이 연소자들을 돕기 위한 특별한 원조와 보호 ■아동노동력에 대한 착취금지 등에 대한 권리를 담고 있다.

#### <제11조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식량권, 주거권>

제11조는 규약의 전체적인 목적과 관련해 매우 광범위하게 중요한 조항이다. 제11조는 생존권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생활수준의 향상과 식량의 공평한 분배를 제기하는 항목이다. 제11조는 ‘적절한 식량을 포함하여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와 ‘기아로부터 해방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삶의 질에 대한 권리, 지속적인 생활조건 향상에 대한 권리, 적절한 의·식·주에 대한 권리를 포괄하고 있다. 특히 제11조 제1항에 기술된 ‘적절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권리’에는 식량, 주거, 물 등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권리들을 열거한 것이다.

제2항에는 식량권을 명시하고 있는 데 특히 기아와 영양실조로부터 자유로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적절한 식량권은 모든 권리의 기본적 향유를 위해 필수적이다. 사회권위원회의 관심사항은 생산수단의 향상 등 먹을 권리의 실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다. 특히 굶주림에서 벗어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식량 생산을 과학화하고 개혁하며 수출·입국간에 공평한 식량분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입을 권리’의 경우는 단지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적절히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의 일부로서 요구된다.

제12조로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로부터 파생된 권리에는 주거권과 물에 대한 권리가 있다. 우선 주거권은 단순히 지붕 있는 공간이거나 상품으로 해석하는 한정적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안전하며 평화롭고 존엄하게 살 권리로 해석되어야 한다. 특히 소득이나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는 별개로 모든 이들에게 주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주거권은

다른 권리-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거주 및 이동의 자유, 프라이버시, 공공정책에 참여할 권리-의 실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주거권을 이루는 기본요소로는 △점유의 안정성 △감당한 만한 주거비용 △주거 자원에 대한 대중의 참여와 통제 △주거에 관한 모든 형태의 차별·위협·침해의 방지 △적절한 주거의 권리 △마실 물·하수처리·전기·난방·도로·조명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 등을 포함한다.

물은 제한된 천연자원이고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공공재이다. 때문에 물에 대한 권리는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의 하나이고 명백하게 적절한 생활수준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보장의 범주 내에 포함된다. 물에 대한 권리에는 모든 사람이 개인적이고 가사적인 용도를 위해 충분하고 안전하고 수용가능하고 물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비용 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로부터 물에 대한 권리를 이끌어내고 있다.

#### <제12조 건강권>

모든 인간은 존엄한 삶에 보탬이 되는 도달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제12조는 모든 사람의 육체·정신적인 건강권을 다루고 있다. 제12조 제1항은 건강권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2항은 당사국의 의무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건강권은 ■건강과 몸에 대한 통제 ■건강권을 향유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 제공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건, 시설, 재화, 서비스에 대한 권리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사회권위원회는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건강 관련 사안에 대한 결정권(안전에 대한 접근성, 안전한 음식·영양·주거·건강한 작업조건·안전한 환경 등), 건강교육·정보에 대한 접근권까지 넓게 해석하고 있다. 특히 ■모성과 아동의 건강권 ■환경 및 산업안전에 대한 권리 ■질병의 예방·치료·통제에 대한 권리와 인권을 침해받기 쉬운 사람들(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선주민)에 대한 건강권에 주목하고 있다.

#### <제13조, 제14조 교육권>

교육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인권이며 다른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다. 권한부여적(empowerment) 권리로서 교육은 경제·사회적으로 소외된 성인과 아동이 빈곤에서 벗어나고 공동체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획득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제13조와 제14조는 교육과 관련한 모든 차원의 권리를 다루고 있다. 제13조는 교육권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당사국은 아이들이 어디에 살건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초등교

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또한 당사국은 ■교육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 ■교육시설을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권리 ■교육을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 ■교육기관을 자유롭게 설립할 자유 ■학문의 자유 보장 ■비인도적인 처우와 훈육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제14조는 무상초등교육을 확보할 수 없는 당사국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 이 사안을 점진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행동계획을 2년 내에 입안, 채택할 의무를 기술하고 있다.

#### <제15조 문화권, 과학권>

자신이 저자인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및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는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에서 나오는 인권이다. 제15조는 ■문화를 향유할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과학과 기술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다루고 있다. 제15조가 인권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제15조에는 대우에서의 평등, 표현의 자유, 정보를 주고받을 권리, 인간성을 충분히 발달시킬 권리의 중요한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권을 이해하는 데에는 또한 소수집단, 이주민 및 다른 문화적 전통을 지닌 사람들의 문화적 정체성의 확산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sup>20)</sup>

과학권에는 과학기술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 뿐만이 아니라 평등한 접근에 대한 제한들을 제거하고 과학기술의 부작용과 그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까지 포함된다. 지적재산권의 보장은 지적 성과를 보호하고 그것이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 지적재산권 보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지적재산권은 지식과 문화의 생산에 대한 공공적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여, 이렇게 생산된 지적 생산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성격이 변화되어야 한다.

20)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01. 참조

